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538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 인사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교무과), 02-970-6023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3. 10. 22.

개정 2015. 6.29.

개정 2020. 6. 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의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"조교"는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15. 6. 29.>

제3조(구분) 조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국고조교 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6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

2. 대학조교 :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임용된 조교<개정 2015. 6. 29.>

3. 실험실습전문조교: 대학조교 중에서 3개 학과(프로그램) 이상이 공 동으로 사용하고 연평균 주당 30시간 이상 활용하는 학교지원시설 또 는 단과대학 직속의 교육용실험실·분석실에서 실험 및 실습을 보조하 는 조교〈개정 2015. 6. 29.〉

제4조(자격)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학업

성적이 우수하며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 제5조(신규임용) ① 조교는 공개채용하며, 학기 초(매년 3월 1일, 9월 1일)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- ② 채용의 심사기준 및 방법 ·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.
- ④ 임용기간이 학기 중 끝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을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로 본다. 다만, 대학조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6. 29.>
- 제6조(조교의 재임용) ① 조교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.
 - ② 삭제 <2015. 6. 29.>
 - ③ 총장은 조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 2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해당 조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조교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⑤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조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 1월 전까지 해당 조교에게

알려야 한다.

- ⑥ 조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서식 "조교 재임용 심사 평정표"에 따라 심사한다.
- ⑦ 조교의 재임용 심사 평정은 우리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5. 6. 29.>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 다.
- 1. 제6항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. 다만, 심사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지 아니한다.
- 2. 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
- ⑨ 조교의 재임용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, 2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 29, 2020. 6. 3.>
- ① 삭제 <2013. 10. 22.>
- ① 제5조제3항·제4항 및 제6조제9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조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.
- 제7조(대학조교의 정원) 대학조교의 정원은 대학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총 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 6. 29.>
- 제8조(대학조교의 보수) 대학조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 6. 29.>

- 제9조(대학조교의 복무) 대학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 29.>
- 제10조(대학조교의 징계) 대학조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교육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 29.>

부칙<제8호, 2012. 3. 1.>

이 규정은 2012. 3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12호, 2013. 10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조교는 종전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.

부칙<제287호, 2015. 6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 인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국고조교(특수조교 포함)는 종전의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 인사 규정에 따른다.
 - ② 2015년 4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대학조교의 총 임용기간은 종전의 기성회조교 임용기간을 포함한다.
 - ③ 2015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국고조교(2년제)는 퇴직후 국고조교(5년제)로 신규임용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총 임용기간은 국고조교(2년제) 근무기간을 포함한 5년으로 한다.

부칙<제538호, 2020. 6. 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조교의 재임용 및 재직기간은 종전의 규정 제6조제9항에 따른다.

[별지 서식]

조교 재임용 심사 평정표

■ 재임용 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	직 급	성 명	
생년월일	최초임용일	현직급임용일	

■ 재임용 심사

	평정점수			
평정항목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
	(20점)	(16점)	(12점)	(8점)
1. 교수의 수업 및 연구활동에				
대한 보좌능력				
2. 교수의 학생지도업무에				
대한 보좌능력				
3. 학생지도능력과 열의				
4.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및 품위				
5. 근무태도 및 출퇴근 상황				
총점			점	
종합의견				

*	해당란에	"○"표하여	주시기	바랍니다.
---	------	--------	-----	-------

※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평정표는 봉투에 넣어 **밀봉**·날인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년	월	일

평정자 소속: 직급: 성명: (서명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